

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3.11.27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3년 11월 15일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3년 11월 19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8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(2013년 11월 27일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- 제안설명자 : 기획예산과장 조주연

가. 제안이유

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통합관리기금의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원인 여유자금에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·예수금을 포함하고, 기금 용도에 일반회계로 전출을 신설하며,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장치등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(1)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인 여유자금 정의를 ‘각종 기금의 여유자금’에서 ‘각종 기금 등의 여유자금’으로 변경함(안 제1조).
- (2) 여유자금의 종류를 ‘일반회계,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및 예수금 등’으로 확대함(안 제4조).
- (3) 기금의 용도에 일반회계에 대한 용자내용을 신설함(안 제6조).
- (4)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해촉 규정을 신설함(안 제9조의2, 제9조의3).
- (5)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함.

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박상수)

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지방세수 여건이 악화되고, 인건비와 복지 사업비 등의 경직성 경비 증가로 세입대비 세출요구 규모가 상회하는 등 구재정이 어려움에 따라 통합관리기금 여유자금의 융통성 및 효율 극대화로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금 재원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추가하고, 기금 용도에 일반회계에 대한 융자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,

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에서 통합관리기금의 정의를 ‘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한 기금’에서 ‘기금,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한 기금’으로 변경하였고, 안 제4조를 신설하여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을 ‘일반회계,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’으로 확대하였음.

안 제6조제2호에서는 통합관리기금의 용도를 ‘타기금 및 주차장 등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자금의 융자’에서 ‘다른 기금,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자금의 융자’로 변경하여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일반회계에도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고,

안 제9조의2와 제9조의3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·기피·회피와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하였으며, 기타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 및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맞게 조문상 용어를 정비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